

英國의 會社法 改正方向과 示唆點

尹 榮 信*

〈目 次〉

- | | |
|-------------------|--------------------|
| I. 序 | III. 英國 會社法 改正의 方向 |
| II. 英國 會社法 改正의 經過 | IV. 示唆點 |

〈요 약〉

최근 회사법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영국에서도 최근 광범위한 회사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1998년 현재의 복잡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누더기식의 회사법 대신 21세기를 위한 현대적인 법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회사법 개정검토(Company Law Review)를 시작하였다. 이 작업을 위하여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Company Law Steering Group)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와 방향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조회(consultation)을 한 후 의견조회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수차례 걸쳐 반복하면서 개정안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1월에 회사법개정법안(Company Law Reform Bill)이 상원에, 2006년 5월에는 하원에 제출되어 2006년 8월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주주의 참여제고와 장기적 투자문화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소규모회사 우선(Think small first),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용이화로 요약할 수 있다.

〈주제어〉 영국회사법, 이사의 보수, 영업 및 재무보고서, 이사의 의무, 회계감사인, 폐쇄회사, 통합준칙

* 忠南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I. 序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는 세계 각국의 지상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기초한 자본시장의 발전이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회사법의 정비는 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회사법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영국도 이러한 회사법 개정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회사법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 전반적인 회사법 개정검토는 영국의 현재 회사법이 19세기 중반에 그 기본구조가 완성되어 현대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장과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법에 회사스캔들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부분적인 개정이 추가되어 현재의 일관성 없고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¹⁾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홍콩 등 영국법을 모델로 하고 있던 영연방 국가들에서 연속적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영국회사법이 글로벌경제시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회사법에 대한 근본적 개정검토(Company Law Review)할 계획을 밝혔고, 이러한 계획이 영국에서 압도적인 환영을 받음에 따라²⁾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이하 개정검토위원회로 약칭함)를 구성하여 회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6년 8월 현재 회사법안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글은 영국 회사법의 개정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회사법 개정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장에서는 회사법 개정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 회사법 개정과정 중에 수많은 의견조치문서(consultation document)와 백서(white paper)가³⁾ 발표되었고, 회사법 개정검토의 완결되기 전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1) 대개 20년 간격으로 회사법개정에 대해 검토할 위원회가 임명되고, 이러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정법(amending act)을 통하여 기존 조항을 수정·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다가 이러한 부분적 개정이 집적되면 이를 통합(consolidation)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1908년, 1929년, 1948년에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통합판은 1985년 회사법으로서 이것이 현재까지 회사법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 되고 있다.

2) Jonathan Rickford, A History of the Company Law Review, The Reform of United Kingdom Company Law (ed. by John de Lacy),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2), pp. 10-11.

부분적 개정입법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영국 회사법개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 경과를 간단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영국회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장기적 투자문화의 양성을 위한 전제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 주주의 참여제고를 위한 개정, 소규모회사의 수요를 위한 개정, 자본 관련 개정 및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용이화에 대한 개정, 회사법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입법방식에 의할 것인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영국 회사법개정의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II. 英國 會社法 改正의 經過

1. 회사법 개정검토의 개시

영국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의견조회문서(consultation document)³⁾「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 (1998.3)」⁴⁾을 발표하여 회사법에 대한 근본적 개정검토(Company Law Review)를 하기로 하였다. 회사법 개정검토는 ‘핵심회사법(Core company Law)’⁵⁾에 한정하여 검토를 하고, 현재의 복잡하고 시대에 뒤쳐지고 누더기식의 회사법 대신 21세기를 위한 현대적인 법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회사법 개정검토작업의 진행을 위해 DTI는 개정검토위원회(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과 구체적 작업을 담당할 실무작업팀(Working Groups)을 구성하고 준비작업에 다방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두었다.

3) command paper는 의회제출문서(Parliamentary paper)로서 실제로는 장관이 제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왕폐하의 명령에 따라(Command of Her Majesty)” 제출된다는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command paper의 주제는 주요 정책제안(White Paper)과 의견조회문서(Consultation document, Green Papers), 조약과 같은 외교문서, 위원회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 주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나 정부부서의 보고서나 검토의견이다.

4)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1998.3)[URN 98/1242] 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283.pdf?pubpdfload=98%2F1242>.

5) ‘핵심회사법(core company law)’이란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 회사법 개정검토 범위에서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6)을 제외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2. 개정검토위원회의 개정방향 제시

개정검토위원회는 1998년 6월 처음 회동하여 개정검토위원회와 실무작업팀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와 개정작업에서의 준거를 정한 후, 이에 따른 작업 결과 1999년 2월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전략적 구상』⁶⁾을 발표하였다. 검토작업의 준거는 회사법을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강행법규에 의한 강제와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검토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법의 범위 문제로서 회사의 존재목적을 주주이익의 최대화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중시 중 어느 쪽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 ②소규모 폐쇄회사의⁷⁾ 수요에 대한 배려 ③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율 간소화 ④자본유지에 관한 복잡한 규율의 간소화 ⑤법률과 여타 규제의 경계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⑥영국법의 경쟁력을 포함하여 국제적 환경에서의 영국법 ⑦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회사법에의 영향 ⑧소규모회사에 대한 회계 및 재무보고 면제 및 기타 회계 및 재무보고규정 및 회사 회계서류의 형식과 회계감사인의 책임 『전략적 구상』의견조회문서 발표 이후 개정검토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의견조회문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회답을 참고하여 정책방향과 구체적 개정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1999년 10월에 검토작업이 먼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는 3개의 의견조회문서를 발표하였다. 『주주총회와 주주와의 통신 (1999.10)』,⁸⁾ 『회사의 설립과 자본유지(1999.10)』,⁹⁾ 『외국회사에 관한 법의 개정(1999.10)』¹⁰⁾이 그것이다. 2000년에는 회

6)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The Strategic Framework, A consultation document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2)[URN 99/654]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279.pdf?pubpdfdownload=99%2F654>.

7) 영국에서 주식회사는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폐쇄회사(private company)로 나눈다. 양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 기준은 폐쇄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any general meetings and shareholder communication,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4] 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274.pdf?pubpdfdownload=99%2F1144>.

9)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any formation and capital maintenance,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5] 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277.pdf?pubpdfdownload=99%2F1145>

10)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Reforming the law concerning overseas companies,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사지배구조와 소규모폐쇄회사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 전략적 구상의 발전(2000.3)』¹¹⁾을 발표하였다.

이들 의견조회문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 회사법구조의 완성(2000.11)』¹²⁾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검토위원회는 2001년 7월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 최종보고서(2001.7)』¹³⁾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에는 최종개정제안과 함께 회사법안의 일부초안이 게재되었다.

3. 부분적 개정입법

회사법 개정검토의 취지 중의 하나는 일부 개정이 계속됨으로 인한 혼란과 불명확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전면적 회사법개정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진행이 지체되자 회사법 개정검토에서 제안된 사항 중 일부는 회사법 개정검토의 완결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부분적 개정입법을 하였다. 2002년 이사의 보수 보고 규칙,¹⁴⁾ 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¹⁵⁾ 1985년 회사법 개정규칙(중소규모회사의 회계 및 회계감사 면제),¹⁶⁾ 1985년 회사법 개정규칙(영업 및 재무보고(OFR)와 이사보고 등)¹⁷⁾의 개정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은 회사법 개정작업의 완결시 회사법안에서 반영되게 된다.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6] 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278.pdf?pubpdfload=99%2F1146>.

11)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Developing the framework,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2000.3) [URN 00/656] available at <http://www.dti.gov.uk/bbf/co-law-reform-bill/clr-review/page25086.html>.

12)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leting the structure, A consultation Document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2000.11) [URN 00/135] available at <http://www.dti.gov.uk/bbf/co-law-reform-bill/clr-review/page25080.html>.

13)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Final Report, 2 volumes (2001.7) [URN 01/942, 01/943].

14)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s 2002 (SI 2002/1986)

15)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16) Companies Act 1985 (Accou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nd Audit Exemption) (Amendment) Regulations 2004 (SI 2004/16).

17) The Companies Act 1985 (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s(OFR) and Directors' Report) Regulation 2005 (SI 2005/1011)

4. 정부의 대응

2002년 7월에는 최종보고서 제안의 주요부분에 관한 정부의 회답과 회사법개정법안의 일부를 포함한 『회사법현대화(2002.7)』백서(white paper)가¹⁸⁾ 의회에 제출되었다. 통상적으로 백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책을 제안하는 의회제출문서이지만, 『회사법현대화백서』는 확정적인 계획을 밝힌 것이 아니라 후속의 입법의견조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백서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사법현대화백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회사법개정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회사법 개정검토가 생각보다 방대한 작업이었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기도 한다.¹⁹⁾ 『회사법현대화』 백서에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일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고 검토를 미룬 부분도 있다.

또한 회사법 개정작업은 회사법의 실체적 내용의 개정과 회사법 조문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사법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어떠한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관해 의견을 조화하는 『회사법. 유연성과 접근성(2004.5)』 의견조회문서를²⁰⁾ 발표하였다.

5. 최종 개정방향 및 개정안의 제출

2005년 3월 DTI는 『회사법개정(Company Law Reform)(2005.3)』²¹⁾ 백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백서에는 회사법 개정의 목표를 ①회사의 설립과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②투자자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자본의 효율적 배분 촉진 ③주주의 참여와 기업과 투자자의 효율적 접촉을 통한 회사의 장기적 성과 제고 ④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서 영국의 지위 유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개정방향과 아울러 300여개의 조문안이 서술되었고, 그 이후 7월, 9월, 10월에 추가적으로 조문안이 공표되었다. 이 백서에 의하면 1985년 회사법의 3분의 2정도가 개정된다.

2005년 11월 1일 885조문과 15개의 부속표(Schedule)로 이루어진 회사법 개정법안

18) Modernising Company Law, Cm 5553 (2002.7)

19) Eilis Ferran, Company Law Refrom in the United Kingdom: A Progress Report, ReabelsZ Bd. 69 (2005) S. 633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644203>.

20)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Company Law. Flexibility and Accessibility: A consultative document (2004.5) [URN 04/994].

21) Company Law Reform, Cm 6456 (2005.3).

(Company Law Reform Bill)이²²⁾ 상원에 제출되었고, 2006년 5월 24일 하원에 제출되어 2006년 7월 20일 현재 하원 위원회 절차를 종료하였다. 이 법안의 명칭은 2006년 7월 하원의 위원회 절차에서 ‘회사법안(Companies Bill)’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Ⅲ. 英國 會社法 改正의 方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법 개정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의견조회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 확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처음 검토사항의 변경이나 추가, 폐기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유연성과 접근성』의견조회문서의 Annex C에서 회사법안의 주요 개정논점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 2005년 『회사법개정』백서에서 밝힌 개정방향과 이미 부분적 개정입법에 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 및 기타 우리나라에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장기적 투자문화의 발전

가. 이 사²³⁾

(1) 이사의 의무의 성문법화

현재 영국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정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개정검토위원회는 이사의 의무 법리가 더욱 일관성 있고, 확실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이유로 이사의 일반적 의무를 제정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개정안²⁴⁾에 의하면 이사는 ①회사의 정관에 따라 행위하고 권한은 그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가장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이사가 성실하게(in good faith) 판단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재산 또는 정보, 이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알게된 회사의 기회를 이사 개인의 이익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동의하거

22) The Company Law Reform Bill [HL] Bill 34 2005-06

23) Company Law Reform, para. 3.3.

24) Company Law Reform에서 채택된 내용이다.

나, 폐쇄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이사를 제외하고)로 그 이용에 동의하고, 정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공개회사에서 정관상의 이사회에 대한 수권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⁵⁾

(2) 이사의 의무의 내용 - “진보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영국에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회사’란 보통법상으로는 전체로서의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⁶⁾ 1980년 이사는 전체로서의 종업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CA 1985 s. 309), 종업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종업원이 이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인지 또는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사가 주주가치 최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종업원, 공급자, 지역사회와 같이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더 나아가 공중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지는(pluralist approach) 회사법 개정검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의견조화에 대해 극단적인 이해관계자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사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견해는 거의 없었고,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다만 여기서 회사의 이익을 좀더 광범위한 요소로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를 주주의 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²⁷⁾

이러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성공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업원, 공급자, 고객 등과의 관계, 높은 수준의 사업윤리 유지의 필요성, 이사들의 행위가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도 고려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진보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25) 이사의 의무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John Birds, "The Reform of Directors' Duties", The Reform of United Kingdom Company Law(ed. by John Lacy)(2002). 이러한 성문화에 대해서는 판례법상 발전된 이사의 의무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없고 이사의 의무에 관한 원칙의 융통성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Geoffrey Morse, Charseworth's Company Law (7th ed.)(2005), p.306]

26) Paul Davies, G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7th ed.)(2003), p. 372; Geoffrey Morse, Charseworth's Company Law(17th ed.)(2005), p. 297.

27) Developing the Framework, para. 2.7-2.25..

입장을 택하였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의 의무를 성문화 하는 데에 반영되었다.

최종보고서는 성문화 된 이사의 의무에 1986년 도산법 제214조의 부당거래규정, 즉, 회사가 도산을 회피할 합리적 전망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도산관재인(liquidator)의 신청에 따라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의무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회사법현대화』백서에서 정부는 이 의무는 도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을 회사법에 규정하기 않기로 하였고, 『회사법개정』백서에서도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당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이사의 의무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likely to become insolvent)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도산위험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의무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이사가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생의 전망이 있는 거래를 중단할 위험성 때문에 『회사법현대화』백서와 『회사법개정』백서 모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3) 이사의 보수 - 2002년 이사의 보수보고규칙

1990년대부터 이사에게 거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논쟁이 되어 왔고, 2000년대 초반에는 회사의 스캔들과 기술주 붕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해 과도한 보수가 지급된 것에 대한 비난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이사의 보수를 공시함으로써 이사보수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이사의 보수보고규칙(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s 2002)을²⁸⁾ 제정하였다.²⁹⁾

2002년 이사보수보고규칙에 따라 상장회사(quoted company)³⁰⁾는 연차보고서에서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 공시의무가 상장규정상의 의무에서 법상의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 공시에는 회사의 보수 정책, 보수위원회 역할 및 위원에 관한 사항,

28)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 2002 (SI 2002/1986); The Companies (Summary Financial Statement) Amendment Regulations 2002 (SI 2002/780)

29)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s' Remuneration: A Consultative Document (1999) [URN99/923]의 의견조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1년 12월에 상장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공시에 대해 제안한 의견조회문서 『이사의 보수』가 발표되었다(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s' Remuneration: A Consultative Document (2001)). 2002년 이사의 보수보고규칙(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s 2002)은 이 보고서의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개정으로서 200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30) 주식이 영국이나 EEA 회원국에서 상장되어 있거나 NYSE, NASDAQ에서 거래되는 회사(CA 1985 s. 262(1)).

각 이사의 당해연도 보수 패키지 총액이 포함되어야 하고(1985년 회사법(이하 CA 1985로 표기함) ss 234B-C, 241A 및 sch. 7A), 보수위원회의 고려에 관한 사항, 과거 5년간 회사의 업적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사의 고용계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이사의 보수 패키지를 기재한 보수보고 부분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CA 1985 s 235 및 sch. 7A. Pt3).

또한 상장회사는 연차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이사의 보수보고서 승인결의를 하여야 한다(CA 1985 s. 241A). 이 결의는 각 이사의 보수가 아니라 보수보고 전체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것이고, 결의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권고적 효력의 주총승인결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했으나 상업적으로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주주는 관심이 없고 기관투자자는 경영진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이러한 권한 행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법개정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으나 2003년 6월에는 경영이 악화된 회사에서 퇴임 이사가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치문서 ‘실패에 대한 보상’이 공표되었다.³¹⁾ 의견조치의 결과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직후에 1천5백만파운드의 퇴직 보수 지급사건이 발생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는 개정검토에서 계속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4) 이사의 책임

영국에서는 이사 및 회계감사인 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면제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었다(CA 1985 s.310). 다만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민사·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방어비용 보상(indemnification)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의 책임강화는 비업무집행이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이사의 확보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 DTI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연구에서³²⁾ Higgs는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잠재적 책임가능성이 비업무집행이사직 취임 억제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정부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 특히 보상(indemnification)에 대한 금지에 대해 검토할 것 촉구하였다.³³⁾

31) Rewards for Failure : Directors' Remuneration-Contracts, Performance and Severance: a Consultative Document (2003.6) [URN 03/652].

32) 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2003.1) [URN 03/636] available at <http://www.dti.gov.uk/files/file23012.pdf?pubpdfdownload=03%2F636>.

33)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v. Hyman, [2002] 1 A.C. 408, H.L. 사건에서는 회사가 종전의 이사에게 30억파운드의 배상청구를 하였는바, 이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따라 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Act 2004)을 제정하여³⁴⁾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보상을 허용하였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과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벌금과 금융감독당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와 같은 규제기관이 부과한 제재금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②이사의 방어 비용을 비용발생시 이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지급은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사가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방어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이사의 책임에 관한 보상은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에서 개시되어야 하고, 주주는 보상계약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이에 더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타당성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대표소송의 성문법화³⁵⁾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보통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제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회사법개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를 성문화할 방침을 밝혔다.

나. 회계감독 및 공시

(1) 회계감사인 및 회계에 대한 감독 강화(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

Enron 사태 이후 미국의 Sarbanes-Oxley Act의 영향으로 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Act 2004)에 의해³⁶⁾ 회계감사인 및 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법은 영국의 Professional Oversight Board for Accountancy(POBA)의 법적 근거 제공을 포함하여 회계감사인에 대한 제도적 감독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신뢰

자체가 충격이었다.

34) DTI는 2003년 12월 이사 및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완화여부에 관한 의견조회문서를 공표하였고(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 and Auditor Liability: A Consultative Document (2003.12) [URN 03/1638]), 이에 대한 응답을 반영하여 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35) Company Law Reform, para. 3.4.

36) 이 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회계감독 강화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지역사회이익회사라는 전혀 별개의 주제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confidence)관계 위반책임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것 등 회사에 대한 조사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사에게 ①이사가 아는 한 회계감사인이 모르는 관련된 회계정보(audit information)가 존재하지 않고 ②관련된 회계정보를 인지하고 회계감사인이 그 정보를 알도록 하기 위해 이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음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회계감사인의 책임과 회계의 수준 제고³⁷⁾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 및 회계감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면제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었다(CA 1985 s.310). 그런데 회사스캔들의 경우에 스캔들의 관계자들간 귀책사유의 비율에 비례하지 않고 회계감사인이 ‘자력이 풍부한 피고(deepest pocket)’로서 손해배상을 100%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³⁸⁾ 이사의 책임제도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의 책임제도는 2004년 회사법(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에 따라 개정되었지만,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 이루어진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과 회계감사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회계감사인과 고객 및 투자자들의 연합의 연구에 힘입어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개정방침을 표명하였다.

『회사법개정』백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①회계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감사인의 손해에 대한 비율적 책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는 액수로 제한하는 것을 주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가 사전에 배상액을 일정 액수나 회계감사료의 몇 배와 같은 일정한 액수를 산출하는 산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의할 수 없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 합의는 매년 회계감사 전에 해야 하고 연차재무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한다. ②회계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계감사계약의 공시, 주주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질문권, 회계감사인의 사임서면의 공시, 책임회계감사인(audit lead partner)의 회계감사보고서에의 서명, 그 외에도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 Wales(ICAEW)와 함께 회계감사의 수준제고와 회계감사인간 경쟁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를 모색할 방침을 밝혔다.

37) Company Law Reform, para. 35.

38) 일련의 회사 스캔들 이후 실제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대개 화해로 해결되어서 회계감사인이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3) 영업 및 재무보고서

(가) OFR 제출의무

영업 및 재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s; OFR)는 기존의 재무보고는 정량적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영업, 성과, 계획 및 전망, 이사가 사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예를 들어 종업원, 거래처, 고객과의 관계,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회사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등)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1985년 회사법(영업 및 재무보고와 이사보고서 등) (개정)규칙 2005 (The Companies Act 1985 (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and Directors' Report etc.) Regulations 2005)³⁹⁾이 통과되어 2005년 3월 22일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quoted company)는 OFR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OFR 규칙의 폐지

OFR 규칙은 입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되게 되었다.⁴⁰⁾ 그 이유는 EC의 「회계현대화지침(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⁴¹⁾의 국내입법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이사의 보고서(directors' report)에 '경영검토(business review)'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검토는 사업의 성과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이나 종업원 문제도 포함된다. OFR과 유사하지만 OFR이 좀더 상세한 개시를 요구하고 회계감사인에 의한 좀 더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EC기준에 따라 규율을하기로 한 것이다.

2. 주주의 참여제고⁴²⁾

가. 주주 및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웹사이트상의 사전공시

이사는 회계서류와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주주총회와 회

39) SI 2005/1011.

40) The Companies Act 1985 (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Repeal) Regulations 2005 (SI 2005/3442).

41) Directive 2003/5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3 amending Directives 78/660/EEC, 83/349/EEC, 86/635/EEC and 91/674/EEC on the annual and consolidated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undertakings.

42) Company Law Reform, para. 3.1.

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a 1985 s 241, s 244). 개정안은 상장회사에게 위 서류를 주주총회와 회사등록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웹페이지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 정보는 주주뿐 아니라 일반 공중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주제안의 비용

현행 회사법상 일정비용 이상의 의결권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주는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CA 1985 s 376). 회사는 이러한 조치 비용의 예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CA 1985 s 377(1)(b)). 개정안에서 상장회사 주주는 회계서류가 열람 가능하게 된 후 15일 이내에 회계서류가 제출되는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의안은 회사의 비용으로 통지되도록 하였다.

(3) 소수주주의 투표결과 조사권

상장회사 주주는 일정비용 이상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또한 조사보고서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시되어야 한다.

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영국의 상장회사 주식의 대다수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기관투자자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관해서는 이익충돌(회사경영자와 사업관계 등), 의결권행사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적절한 경영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최종보고서는 기관투자자 권리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였다. 즉 상장회사에 대해 ①연차보고서에 주요한 금융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개시할 것 ②주주총회에서 투표의 결과를 웹사이트 및 연차보고서에 개시할 것 및 ③주주총회에서 투표의 조사가 제안되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④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내역을 고객에서 공시할 것이 제안되었다.

『회사법현대화』 백서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②와 ③은 지지하였지만, ①은 공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④는 회사법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았다.

『회사법개정』 백서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검토는 기관투자자위원회(Institutional Shareholder Committee)가 공표한 의결권 행사 원칙과 같은 대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다. 통합준칙(combined code)의 이용

회사지배구조에 관하여 영국에서는 1990년경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Cadbury위원회, Green위원회, Hempel위원회에 의한 검토작업이 중요한데, 그 성과는 모범적 경영관행규정(Code of Best Practice) 및 회사지배구조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현재 상장규정의 부록인 통합준칙(Combined Code)으로서 단일화되었다. 상장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해선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와 연차회계서류(annual accounts)에 통합준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준칙은 “규정(provision)” 부분과 “원칙(principles; 주요원칙(main principles)와 지원원칙(supporting principles)로 구성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정”에 관해서는 준수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의 내용과 다른 지배구조를 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정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원칙”에 관해서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법 개정검토에서는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통합준칙의 내용을 강행 법규화하지 않고 준칙에 대한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 “소규모회사 우선(Think Small First)” 원칙

가. 폐쇄회사에 회사법에의 접근가능성 개선

(1) 폐쇄회사 중심의 규정체계

현재 영국의 회사는 대부분이 폐쇄회사인데, 영국 회사법은 대규모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폐쇄회사에 관해서는 그 중 일정 부분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폐쇄회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회사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개회사에 관한 규정 전반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고, 소규모 폐쇄회사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규정이 많다.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최종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회사법의 출발점을 폐쇄회사에 관한 규제로 하고, 공개회사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2) 회사법에 대한 안내

또한 영국에서는 특히 소규모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법에 대한 공식적 해설서 내지는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다. 회사법 개정백서에서는 모범정관을 사용하는 소규모 회사를 위

한 해설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회사등록소(Companies House)에서는 회사법의 일부 부분에 대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술된 해설을 제공하는바, 이를 더 확장하기로 하고 웹사이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폐쇄회사를 위한 별도의 표준정관⁴³⁾

영국회사법의 특징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 정관에서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5년 회사법의 Table A는 주식회사의 표준정관(default articles)으로서, 회사가 별도의 정관을 회사등록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관이 Table A의 내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이 회사의 정관의 내용이 된다.⁴⁴⁾ 이러한 Table A는 당초부터 현재 영국의 공개회사에 해당되는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이 점차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관으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회사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많다.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표준정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폐쇄회사를 위한 간소화된 표준정관, 현재의 Table A와 유사하지만 조문과 배열을 새롭게 한 공개회사를 위한 표준정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폐쇄회사의 의사결정절차 간소화⁴⁵⁾

(1) 연차총회 임의화

현행법상 회사는 연차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최소한 연간 1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CA 1985 s 368), 개정안은 폐쇄회사에서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AGM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회사법현대화』백서에서는 단독주주가 AGM의 개최 및 회계서류의 제출과 회계감사인의 재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촉구되었는바,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간소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10%의 소수주주권으로 하였다.

(2) 서면결의 요건 완화

폐쇄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전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가 가능하였다(CA 1985 ss 381A, 381B, 381C). 개정안에서는 의결권의 단수과반수와 75%로 서면의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Company Law Reform, para. 4.3.

44) 표준정관은 배제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표준정관이 회사의 정관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장회사표준정관이 견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45) Company Law Reform, para. 4.1.

(3) 전원동의원칙의 제정법화 포기

최종보고서는 보통법상의 존재하던 ‘전원동의원칙(unanimous consent rule)’을 성문화하고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사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결정은 사원 전원일치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회사법 또는 정관 규정상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규정을 회사법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회사법개정백서에서는 제정법화는 오히려 융통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제정법화 하지 않았다.

다. 폐쇄회사에서 회사행정임원(Company Secretary) 임의화⁴⁶⁾

회사 행정임원이란 회사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역할이 약간 다르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통지업무를 하며 회사가 날인하는 증서에 확인서명을 하고 주식양도관련 및 주주명부, 담보권 등록부, 회사등기관에의 서류제출 등을 하는 회사의 임원이다.⁴⁷⁾ 모든 회사는 회사 행정임원을 두어야 한다(CA 1985 s 283(1),(2)). 개정안에서는 회사법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쇄회사에서는 회사 행정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폐쇄회사의 보고 및 회계 간소화⁴⁸⁾

(1) 소규모회사의 감사면제

최종보고서 및 『회사법현대화』백서에서 제안된 소규모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완화가 1985년 회사법(중소규모회사의 회계 및 회계감사 면제)(개정)규칙⁴⁹⁾에 의해 실행되었다. 여기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각각 560만 파운드와 280만 파운드로 인상함으로써 6만9천여개의 회사가 회계감사의 면제를 받게 되었다.

(2) 현행 회사법 제7장의 간소화

영국에서 현행 회사법의 회계, 회계감사와 재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특히 대규모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소규모회사에서는 변형시켜 적용한다는 규정의 형식상 소규모회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본적 입법방향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

46) Company Law Reform, para. 4.5.

47) 회사 행정임원에 대한 개요는 Geffery Morse, Charseworth's Compnay Law (17th ed. 2005), pp. 334-336.

48) Company Law Reform, para. 4.10.

49) SI 2004/16.

어야 할 규정을 별도로 입법을 하면서, 일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입법기술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3) 간략회계서류

현행 회사법상 중소기업회사는(CA 1985 ss 11247, 247A, 248) 회사등록관에게 간략재무제표(abbrevi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할 수 있다(Ca 1985 ss 246, 246A).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따라 간략재무제표제도를 유지하지만 당해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4. 자본 및 주식관련 규제의 간소화 및 유연화⁵⁰⁾

가. EC 제2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쇄회사에서의 규제 완화

(1) 자본유지원칙의 완화

현행 영국회사법에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총 94개조문에 달하는 매우 복잡한 자본유지원칙을 두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소화하고 유연화하였다. 영국 정부는 공개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해서는 EC의 제2지침에 의한 제약 때문에 개정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므로, 제2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을 하기로 하고, 자본유지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EC 제2지침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공개회사에 대해서도 EC 제2지침의 제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의 자본유지원칙을 합리화 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몇가지 개정도 제안되었다.

우선 폐쇄회사에서의 자본유지원칙 간소화 및 유연화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 허용

폐쇄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을 허용하였다. 원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자본의 유지와 회사자금 유용 및 시세조종의 위험 때문에 금지되고 있었다(CA 1985 s. 151).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면서 우선 EC 제2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용적 거래는 이사의 의무, '불법거래(wrongful trading)' 법리, '시장남용' 법리 등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선 최종보고서의 제안대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50) Company Law Reform, para. 4.8.

(나) 자본감소절차 완화

폐쇄회사의 자본감소절차를 완화하였다. 원래 회사의 자본감소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CA 1985 ss 135-137)). 채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이의를 할 수 있다(CA 1985 s 136(3)). 현행법상 폐쇄회사에서는 이사의 지급가능확인서(decclaration of solvency)가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액과 상관없이 자본을 환급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CA 1985 ss 171-177), 개정안에서는 폐쇄회사의 자본감소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폐쇄회사는 법원의 승인이나 채권자 이의절차없이 지급가능확인서에 따라 자본감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⁵¹⁾

(2) 주식발행관련 규제 완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2지침의 구속을 받지않는 폐쇄회사에서는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승인(회사가 신주발행결과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과 상환주식발행시 정관에 발행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모두 상환주식의 조건과 상환방법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주주는 이사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상환주식의 발행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상환의 조건과 방법은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나. EC 제2지침 범위 내에서의 완화

제2지침의 제한범위 내에서 자본유지원칙과 관련한 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이익배당제한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양도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로 자산을 양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룹간 거래의 수요에 대처하였다.⁵²⁾ ②수권주식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현행법상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기본정관(memorandum)에 기재하여야 하고(CA 1985 s 2(5)), 이러한 수권주식수는 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 실무상 수권자본액수

51) 그 결과 폐쇄회사가 지급가능확인서가 있으면 자본을 환급하여 자기주식취득 및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였다.

52) Aveling Barford v. Perion Ltd. [1989] 1 W.L.R. 360 판결에서 그룹계열사간에 자산을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로 이전한 것이 보통법상의 이익배당제한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이익배당제한규정 위반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여야 하는바, 이는 실제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이익배당제한규정 위반의 우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다.

는 필요한 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로 정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실제 효용이 거의 없다. 개정안에서는 회사법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권자본 한도를 폐지하고, 회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용이화

①폐쇄회사는 현행법상으로도 1인설립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1인설립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현행법상 정관은 기본정관(memorandum)과 통상정관(articles)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정관(constituion)이라는 단일 문서로 통합하여 회사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회사가 회사의 목적을 한정할 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능력이나 이사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④사원은 회사정관의 특정 규정의 개정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6. 장래의 유연성 제공을 위한 입법방식⁵³⁾

회사법 개정작업은 회사법의 실체적 내용의 개정과 회사법 조문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사법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은 법률(primary legislation)로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적 규칙(secondary legislation)으로 규정할 것을 예정하였다. 특히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2차적 규칙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핵심규정과 구체적 규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하나의 법률문제가 법과 2차적 규칙 두 군데에 분산되어 기술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DTI는 2004년 5월 『회사법. 유연성과 접근성(2004.5)』 의견조희문서를⁵⁴⁾ 발표하여 대부분의 규율을 법률에 의하지만, 법률규정사항을 후에 특수한 제2차적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회사법개정』 백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여 회사법의 내용개정(reform)과 법조문의 재작성(restatement)을 모두 특별한 형태의 제2차적 입법에 의하기로 하였다.⁵⁵⁾

53) Company Law Reform, paras. 6.1-6.4.

54)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Company Law. Flexibility and Accessibility: A consultative document (2004.5) [URN 04/994].

55)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 없이 회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Bill로서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www. parliament.

IV. 示唆點

영국 회사법 개정은 영국 특유의 법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떠한 점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앞서서 영국의 개정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회사법개정 방향에 시사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회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강행규정 및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공시를 강화하며, 규율을 간소화한다는 방향은 전세계적인 회사법 개정 동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행규정에 의한 규율을 폐지하는 대신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회사법 규율에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지배구조에 관하여 통합준칙을 ‘준수 또는 설명’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독일에까지 수출되었다.⁵⁶⁾ 이사의 보수에 대한 승인에서와 같이 주주총회의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결의에 의한 간접적 규율도 강제성은 없지만 상당히 실효적 감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규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사의 의무의 성문화는 이사의무 법리의 유연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사의 의무를 ‘진보된 주주가치’ 추구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의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에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이다. 특히 이사의 보고서(directors' report)에 정량적인 정보 외에도 환경이나 종업원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의 성과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성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진보된 주주가치’의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사와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금지하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아간 것은 전세계적으로 회사법이 미국법으로 수렴하여 가는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의 사전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액의 보상을 인정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소송이건 회사에 대한 책임소송이건 불문하고 이사의 방어비용의 선급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회계감사인의 책임도 사전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사후적인 제한을 할 수 있

uk/commons/lib/research/re2006/rp06-030.pdf]

56) Transparenz-und Publizitätsgesetz(BGBI I S. 2681)에 의한 개정.

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정관에 규정을 둬으로써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규모회사를 우선시 하는 입법방향은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폐쇄회사라는 우리나라 실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법을 소규모회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대규모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회사에서는 주주총회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임의화, 서면결의의 허용 및 개정안에서 성문화를 하지는 않기로 하였지만 보통법상 인정되는 전원동의원칙과 같은 영국법의 유연성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법규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영국정부가 일반 대중이 회사법을 쉽게 이해하여 준수할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설서의 제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자본제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에서도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무액면주식을 도입하며 현물출자에 대한 가액평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준비금의 적립의무를 완화하고 준비금을 사용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자본유지원칙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았다. 영국에서 EC 제2지침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폐쇄회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유지원칙 자체를 완화하는 개정을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법정자본제도의 장래에 대한 검토에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개정작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광범위한 의견조화와 이를 반영한 개정방향의 수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개정방식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은 합의가 중시되어서 정당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반발을 최소화하다 보니 특색을 상실한 우려도 있고 급진적인 개혁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보다 오류없는 입법의 장점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회사법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회사법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법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차용할 수는 없지만, 회사법을 유연하고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 Morse, Geoffrey, *Charlseworth's Compnay Law* (17th ed.), Seet & Maxwell, 2005.
- Davies, Paul L., *G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7th ed.), Sweet & Maxwell, 2003.
- Birds, John, "The Reform of Directors' Duties", *The Reform of United Kingdom Company Law*(ed. by John Lacy),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2.
- Ferran, Eilis, *Company Law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A Progress Report*, *RabelsZ Bd. 69* (2005)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644203>)
- Rickford, Jonathan, *A History of the Company Law Review, The Reform of United Kingdom, Company Law*(ed. by John de Lacy),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2.
-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www.parliament.uk/commons/lib/research/re2006/rp06-030.pdf]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1998.3)[URN 98/1242]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The Strategic Framework, A consultation document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2)[URN 99/654]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s' Remuneration: A Consultative Document* (1999) [URN99/923]
-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ompany general meetings and shareholder communication,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4]
-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any formation and capital maintenance,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5]

-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Reforming the law concerning overseas companies,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1999.10) [URN 99/1146]
-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Developing the framework, A consultation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2000.3) [URN 00/656]
- Department of Trade and Commerce,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Completing the structure, A consultation Document from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2000.11) [URN 00/1335]
-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Final Report, 2 volumes (2001.7) [URN 01/942, 01/943]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s' Remuneration: A Consultative Document (2001)
- Modernising Company Law, Cm 5553 (2002.7)
- 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2003.1) [URN 03/636]
- Rewards for Failure : Directors' Remuneration-Contracts, Performance and Severance: a Consultative Document (2003.6) [URN 03/652]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 and Auditor Liability: A Consultative Document (2003.12) [URN 03/1638]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Company Law. Flexibility and Accessibility: A consultative document (2004.5) [URN 04/994]
- Company Law Reform, Cm 6456 (2005.3)

Company Law Reform of UK and It's Implications

◀ ABSTRACT ▶

Young-shin Yoo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mpany law is under dynamic change in most countries of advanced economy. UK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In 1998,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tarted a Company Law Review to make current unsystematic, patchwork style company law to the company of 21 century which can be understood by ordinary people. Company Law Steering Group was formed to carry out this work. Finally, Company Law Reform Bill was submitted to the House of Loes in November, 2005 and the Parliament in May, 2006. The main contents of reform is as follows; First, enahncing shareholder participation and tran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purpose of long term investment culture. Second, think small first approach. Third, simplification of company formation and operation.

KEY WORD : Company Law Reform, Comapny Law Review, CLR, UK, Company Law Steering Group, modernising Company Law, Corporate Governance, 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